



차이나

CHINA Market Report

마켓 리포트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2/3

이메일 : beijingk@kita.net

중국의 수출입관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목차

1. 배경 및 현황
2.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입관리
3. 기술 수출관리
4. 일반화물 수출입관리
5. 시사점

요약

- 최근 중국은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등을 근거로 주요 자원 및 기술 등에 대한 수출입 관리를 강화
- 2023년 갈륨·게르마늄(8월~), 무인기 및 부품(9월~), 흑연(12월~) 등 주요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한 요소 수출관리 강화, 희토류 관련 기술 수출제한 등을 시행했으며, 향후 수출관리는 지속 강화될 전망
- 중국은 매년 군사용과 민간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에 대하여 관리목록을 갱신, 이를 통해 해당 품목과 기술의 수출입을 관리하며, 집적회로 제조 및 컴퓨터 네트워크 등 주요 기술에 대해서는 수출제한 또는 금지 시행
-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수출입관리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공급선 다변화, 비축량 확보 등의 사전 대응조치 필요

1. 배경 및 현황

- 중국은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과 다양한 조례 등을 근거로 주요 자원, 물품, 기술 등에 대한 수출입을 통제 관리
 - 군사, 민간 이중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핵, 바이오, 화학 관련 품목 및 기술에 대한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입관리>를 통해 수입허가 142종, 수출허가 920종의 물품 및 기술 관리
 - 중국 주요 기술의 해외 이전 방지를 위해 <기술 수출입관리>를 통해 수출금지 기술 24종, 수출제한 기술 110종 관리
 - 일반상품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 국내 산업 보호, 공급 관리 등을 위해 수출입금지, 수출제한, 쿼터 관리, 수출허가증 관리 등 다양한 제한 조치 시행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입관리 · 기술 수출관리 · 일반화물의 수출입관리 개요>

구 분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입관리	기술 수출관리	일반화물 수출입관리
근거 법률	<수출통제법>,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입허가증 관리 방법> 등	<대외무역법>, <기술 수출입관리 조례> 등	<대외무역법>, <화물 수출입관리 조례>, <농산품 수입관세 쿼터 관리 잠정조치> 등
규제 목록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입 허가증 관리 목록>	<수출금지·수출제한 기술 목록>	<수입허가증 관리 물품 목록>, <수출허가증 관리 물품 목록>
대상 품목	△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입 허가증 관리목록 : 142종 - 독성 화학물질 54종 - 방사성 물질 10종 등 △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 허가증 관리목록 : 920종 - 핵 관련 물품 및 기술 159종 - 바이오 장비 및 기술 144종 - 독성 화학물질 71종 등 * 2024년 기준	△ 수출금지 기술 : 24종 - 중약재 가공 기술 - 희토류 가공 기술 - 로봇 제조 기술 등 △ 수출제한 기술 : 110종 - 비철금속 야금 기술 - 전자부품 제조 기술 - 항공기 제조 기술 등 * 2024년 기준	△ 수입제한 - 관세 쿼터 관리 농산품 21종 (비료/기타) - 허가증 관리 품목 14종 (오존층 파괴물질/중고기전제품) △ 수출제한 - 쿼터 관리 총 17종 (밀, 옥수수, 입쌀, 석탄, 목화) - 허가증 관리 품목 43종 * 2024년 기준
규제 발표 및 개정 시기	최초 발표 : 2005년 12월 31일 최신 개정 : 2023년 12월 29일 * 매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최초 발표 : 1997년 6월 최신 개정 : 2023년 12월 21일	최초 발표 : 2004년 12월 최신 개정 : 2023년 12월 29일 * 매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발급기관	상무부, 중앙군사위 등 관련 부서, 국무원(중대사항) 등	상무부	상무부, 발개위
허가증 발급 소요 기간 (근무일 기준)	약 15~45일 * 국무원 허가 필요시 추가기간 소요	약 30일~45일	△수입허가증 : 23~45일 △수입관세 쿼터 : 60~75일 △수출허가증 : 33일 △수출 쿼터 : 30~45일

2.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입관리

- 〈수출통제법(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2020)〉을 근거로 이중용도 물품·군수용품·핵 및 그 외 국가이익·안보 또는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등의 국제 의무와 관련된 물품·기술·서비스 등 물자(관제 물자)의 수출을 통제
 - * 이중용도 물품 : 군사용·민간용 이중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으로, 제작이 용이한 독성 화학물질, 핵, 바이오, 미사일 관련 품목 및 기술 등을 포함
- 핵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생물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미사일 관련 물자 및 기술에 대한 이중용도 물품 수출 통제조례 등의 행정조례로 수출관리, 수출허가 등 취득 절차, 필요서류 등을 규정
 - * 핵 이중용도 물품 및 관련기술 통제조례(2007), 생물 이중용도 물품 및 관련기술 통제조례(2002), 미사일 및 관련 물자의 기술수출 통제조례(2002), 제독이 용이한 화학품 관리조례(2018),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입허가증 관리 방법(2005) 등이 포함
-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입허가증 관리목록’을 갱신,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입허가증 관리 방법〉에서 이중용도 물품과 기술의 수출입허가증 발급 절차, 허가증 종류 등에 대해 규정
- 2024년 기준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입허가증 관리목록은 물품·기술 명칭 기준으로 수입 142종, 수출 920종임
 - * 수출허가증목록(920종) : 핵 관련 물품 및 기술 159종, 핵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 통제목록에 나열한 물품 또는 기술 196종, 바이오 장비 및 기술 144종, 화학무기 관련 통제목록에 나열한 물품 또는 기술 74종, 독성화학품 71종, 특수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27종 등이 포함
 - * 수입허가증목록(142종) : 화학무기 관련 통제목록에 나열한 물품 또는 기술 74종, 독성화학물질 54종, 방사성 물질 10종, 상용 비밀번호 4종 등이 포함
- 이중용도 물품 및 관련 기술 분야별로 각 담당부서에서 통제 관리 시행
 - * 핵 이중용도 품목(상무부, 국가원자력관리기관 공동), 생물 이중용도 품목(상무부, 농촌농업부, 국가 위생건강 위원회 등 공동), 미사일 및 관련 물자(상무부,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 등 공동), 화학품 이중용도 물품(상무부, 공업정보화부 등 공동)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입허가증 관리목록 주요 분야〉

번호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입허가증 관리목록	개수(종)	번호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허가증 관리목록	개수(종)
1	화학무기	74	1	핵 수출 통제목록에 나열한 기술 또는 물품	159
2	독성 화학품	54	2	핵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 통제목록에 나열한 기술 또는 물품	196
3	방사성 동위원소	10	3	바이오 이중용도 물품 및 관련 장비, 기술 통제목록에 나열한 기술 또는 물품	144
4	상용 비밀번호	4	4	화학무기 관련 통제목록에 나열한 기술 또는 물품	74
			5	화학품 관련 통제목록에 나열한 기술 또는 물품	38
			6	미사일 관련 통제목록에 나열한 기술 또는 물품	186
			7	독성 화학품	71
			8	일부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13
			9	특수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27
			10	상용 비밀번호	11
			11	무인기 임시통제	1
소 계		142	소 계		920
합 계					1,062

■ 수출 통제목록 외에도 개별 공고를 통한 임시 통제조치 시행

- 임시통제 기한은 약 2년이며, 기한 만료 전 상무부는 수출통제목록에 추가 여부를 공포

■ 중국 정부는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입 입법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2022년 4월 〈이중용도 물품 및 수출 통제조례〉(의견수렴) 발표 후 2022년 5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조만간 공식적으로 발표 예정

※ 참고 : 2023년도 이중용도 수출통제 품목 추가 현황

- 갈륨/게르마늄 관련 품목(8/1~) : HS 10단위 총 38개
- 무인기 및 부품 관련 품목(9/1~) : HS 10단위 총 45개 * 임시통제(최대 2년)
- 인조 및 천연 흑연 관련 품목(12/1~) : HS 10단위 총 7개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입허가증 획득 절차 및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적용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 이중용도 품목/생물 이중용도 품목/미사일 이중용도 품목/제독이 용이한 화학품 등 이중용도 물품 ·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입허가증 관리목록〉에 들어있는 품목 및 기술
필요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의 법인대표, 주요 경영관리자, 취급인의 신분증명서 2) 핵 이중용도/생물 이중용도/미사일 이중용도 등 관련 기술 설명서 또는 검측보고서, 제독이 용이한 화학품의 경우 생산, 경영, 구매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 3) 수출입 계약서 4)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사용용도 증명서 5) 보증서류 (접수자의 공급받은 물품 사용 및 양도에 대한 보증서) 6) 기타 상무부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
심사기관	상무부, 국가원자에너지국, 중앙군사위원회, 의약품 관련 부서, 외교부(외교와 관련되는 경우), 국무원(중대사항인 경우) 등
주요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省)급 상무부서를 통해 상무부 및 관할 기관 또는 부처*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품목에 따라 국가원자에너지국, 중앙군사위원회, 의약품 관련 부서, 외교부, 국무원 등 · 신청서 접수 후 심사 (※ 국가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은 국무원 비준 필요) · 심사 후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입 관련 허가증 발급 및 수령
심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 이중용도/생물 이중용도/미사일 이중용도 : 15일 ~ 45일 ※ 국무원 허가 필요 시, 추가 심사기간 소요, 제독이 용이한 화학품의 경우에는 약품감독관리 부서의 허가 필수
허가증 종류	<p>수입허가증 : 〈비일괄증명(非一批一证)〉(최대 12회) 또는 〈일증일관(一证一关)〉</p> <p>수출허가증 : 〈일비일증(一批一证)〉 또는 〈일증일관(一证一关)〉</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비일증(一批一证) : 수출입 허가증 1개당 유효기간 내 1회만 사용 가능 * 일증일관(一证一关) : 수출입 허가증 1개당 1개의 해관에서만 사용 가능 * 비일괄증명(非一批一证) : 유효기간 내 최대 12회 사용 가능

* 이중용도 물품 관련 허가증 획득 절차는 특정 품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3. 기술 수출관리

- <대외무역법>과 <기술수출입관리조례> 등에 따라 수출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술에 대해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에서 해당 목록을 작성 및 공포, 수출이 제한된 기술은 허가증 관리 시행
- 기술 수출은 중국 국내로부터 국외로 무역, 투자 혹은 경제기술협작 등의 방식을 통해 기술을 이전하는 행위로서 특허권 또는 특허신청권 양도, 특허실시 허가, 기술 양도, 기술서비스 및 기타 방식의 기술이전 등을 포함
- 2022년 12월 30일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수출금지·수출제한 기술 목록>의 개정안*을 발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2023년 12월 21일에 공고문을 통해 공식 시행
 - * 동 개정안은 2001년 12월 10일 최초 발표 이래, 2011년 1차 개정, 2019년 2차 개정, 2020년 11월 29일 3차 개정 이후 4번째 개정임
- 해당 목록은 2020년 개정판 대비 수출금지·제한 항목 34개를 삭제, 37개를 수정, 4개를 신규 추가하여 수출금지 24개, 수출제한 110개 등 총 134개 항목으로 조정
 - 수출금지 기술 목록에 해당하면 수출이 금지되며, 수출제한 기술 목록에 해당하면 중국 당국의 승인 필요
 - * 해외로 기술이전 시 무역 및 투자 등 방식과는 무관하게 <기술수출입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기술 수출 제한목록에 해당하는 분야는 반드시 성(省)급 상무 주관부서에 기술수출 허가를 신청, 최종 승인을 받은 후 기술 수출 진행 가능

<수출금지 기술 목록>

번호	분 야	번호	분 야
1	축산 품종 번식 기술	13	항공우주기기 측정 및 제어 기술
2	누에 번식 및 누에 줄기 수확·가공 이용 기술	14	항공기 설계 및 제조 기술
3	수산 종류의 번식 기술	15	집적회로 제조 기술
4	제지 기술	16	로봇 제조 기술
5	서예, 중국 전통 팔보인주 제조 기술	17	중국 전통 건축 기술
6	불꽃놀이, 폭죽 생산 기술	18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
7	중약재 자원 및 생산 기술	19	위성 데이터 전송 기술
8	중약재 약재 가공 기술	20	위성 응용 기술
9	멸종 위기 식물의 의약 성분 추출 가공 기술	21	인체 세포 클론 및 유전자 편집 기술
10	비결정 비금속 무기재료 생산 기술	22	토지 측량 기술
11	저차원 비금속 무기재료 생산 기술	23	지도 제작 기술
12	희토류의 추출, 가공, 이용 기술	24	중의학 의료 기술

〈수출제한 기술 목록〉

번호	분 야	번호	분 야	번호	분 야	번호	분 야
1	농작물(목초 포함) 유전자원 및 번식 기술	29	비금속 무기재료 생산 기술	57	선박 안전 장비 기술	84	대형 전력 설비 설계 기술
2	소득작물 재배 번식 기술	30	인공 결정 성장 및 가공 기술	58	항공우주용 베어링 기술		
3	농업 야생 식물 인공 번식 기술	31	고분자 복합재료 생산 기술	59	전선, 케이블 제조 기술	85	중국 전통 건축 기술
4	유전공학 (유전자 및 운반체)	32	철강 제련 기술	60	전자 부품 제조 기술	86	건축 환경 제어 기술
5	농작물 이종교배 우위 활용 기술	33	비철금속 제련 기술	61	반도체 부품 제조 기술	87	컨테이너 적하 핵심 기술
6	임목 유전자원 및 번식 기술	34	비결정, 미소결정 금속 제련 기술	62	센서 제조 기술	88	통신 및 전송 기술
7	정원 식물 및 관상식물 번식 기술	35	열처리 기술	63	마이크로파 기술	89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
8	야생 동물 인공 번식 및 보호 기술	36	금속 기반 복합재료 생산 기술	64	광섬유 제조 및 광섬유 통신 기술	90	위성 데이터 전송 기술
9	축산 품종 번식 기술	37	주조 기술	65	컴퓨터 코어 하드웨어 제조 기술	91	위성 활용 기술
10	캐시미어 염소 번식 기술	38	일반 장비 제조 기술	66	무선 통신 기술	92	암호화 기술
11	캐시미어 품종 육성 기술	39	일반 부품 제조 기술	67	로봇 제조 기술	93	고성능 검사 기술
12	수산 유전자원 번식 기술	40	가스터빈 제조 기술	68	계량 기준 표준화 및 측정값 전송 기술	94	정보 보안 방어 기술
13	수의약품 생산 기술	41	3D 프린팅 기술	69	우주용 재료 생산 기술	95	정보 보안 대책 기술
14	수의보건 검역 기술	42	공작기계 산업 공통 기술	70	항공우주 기기 및 장비 제조 기술	96	정보 처리 기술
15	광산 공학 기술	43	대량자재 하역 및 운반 기술	71	무인기 기술	97	컴퓨터 일반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기술
16	설탕 가공 기술	44	냉동 및 저온 공학 기술	72	레이저 기술	98	기본 소프트웨어 보안 강화 기술
17	항운사 가공 기술	45	대형 고속 풍동 설계 및 건설 기술	73	레이저 레이더 시스템	99	해양 시뮬레이션 기술
18	섬유제품 및 가공 기술	46	대형 진동 테이블 계 및 건설 기술	74	컴퓨터 응용 기술	100	토지 측량 기술
19	전통 수제지 생산 기술	47	석유 장비 핵심 부품 설계 제조 기술	75	열량계 제조 기술	101	정밀 계측 기술
20	공예품 제조 기술	48	대형 석유화학 장비 기본 공정 기술	76	기계 물리량 측정기기 제조 기술	102	진공 기술
21	바이오 농약 생산 기술	49	대형기계 산업 전략적 신제품 설계 기술	77	비파괴 검사 기술	103	음향 공학 기술
22	도로 생산 기술	50	선박 선형 설계 및 시험 기술	78	재료 시험기 및 기기 제조 기술	104	계량 측정 기술
23	합성 섬유 생산 기술	51	선박용 장비 제조 기술	79	산업용 시간 측정기 제조 기술	105	위성 영상 촬영 기술
24	중약재 자원 및 생산 기술	52	선박 건조 공정 기술	80	정밀 기기 제조 기술	106	지구탐사 기술
25	생물공학 의약품 생산 기술	53	선박 재료 제조 기술	81	지도 제작 기술	107	중의학 의료 기술
26	중약재 조제 및 생산 기술	54	항공기 설계 및 제조 기술	82	지진 관측 장비 생산 기술	108	문화재 보존 및 복원 기술
27	조직공학 의료기기 제조 및 가공 기술	55	항공기 부품 제조 및 시험 기술	83	유리 및 비결정 비금속 무기재료 생산 기술	109	문화재 복제 기술
28	고무제품 생산 기술	56	항공기 재료 생산 기술			110	대형 청동기 복제 기술

구분	수출제한 기술 허가증 획득 절차 및 주요 내용
적용범위	〈중국 수출제한 기술 목록〉에 등록된 기술
필요서류	1) 중국 수출제한 기술 신청서 2) 기술 수출계약서 복사본 및 별첨 서류, 기술자료 수출목록 3) 양측 당사자의 법적 지위 증명서류 4) 특별 서류 (※ 국가전략기술 등 제한된 기술 수출 시 〈국가기밀 기술 수출 보안유지 심사허가서〉 제출)
절차	상무부 업무시스템에서 신청 접수/성급 상무부서에 문서 제출→상무부 및 관련부서 공동 심사 진행→허가 여부 결정/기술수출허가의향서 발급(3년 유효기간)→기술 수출입계약 체결→상무부서 심사 후 수출허가증 발급
심사기간	기술수출허가 의향서 : 근무일 기준 30일, 허가증 : 근무일 기준 15일
심사기관	성급 상무부

※ 참고 : 희토류 기술 수출 관련 개정내용

- 〈사마륨코발트(SmCo), 네오디뮴철붕소(NdFeB), 세륨자석 제조기술〉 등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기술이 수출 금지항목에 포함, 희토류 수출제한 기술목록 중 희토류 추출제의 합성 공정 및 배합 등이 신규 추가

〈2022년 희토류 관련 수출금지 기술 목록 변경 내용〉

수출금지 기술 목록	
기 존(2020년)	개정안(2022. 12. 30 발표)
<p>▲ 광업공학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온형 희토류 광산 침출 공법 <p>▲ 비철금속아금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온 흡착형 희토류더미 침출기술 및 공식 <p>▲ 희토의 제련, 가공, 이용기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체 희토류 내 희토 원소의 연속 분리, "다중 추출" 프로세스와 매개변수 2. 희토류 추출제의 합성 공법 3. 단일 희토(순도≥99%) 추출 공법 4. 금속재료의 희토 첨가 기술 5. 희토류 합금 소재 및 그 제품의 생산 기술 6. 이온 희토류 광석의 희토류 원소 추출 공법 및 매개변수 	<p>(변경 및 추가)</p> <p>▲ 희토의 제련, 가공, 이용기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희토 추출 분리 공법 2. 희토류 금속 및 합금 소재의 생산 기술 3. SmCo, NdFeB 및 세륨 자석 제조 기술 4. 희토류 봉산 산화칼슘 제조 기술

〈2022년 희토류 관련 수출제한 기술 목록 변경 내용〉

수출제한 기술 목록	
기 존(2020년)	개정안(2022. 12. 30 발표)
해당 없음	<p>(신규 추가)</p> <p>▲ 광업공학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온형 희토류 광산 침출 공정 <p>▲ 비철금속 아금기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희토류 채굴, 선광 및 제련 기술 (수출 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기술 제외) 7. 희토류 추출제의 합성 공정 및 배합 8. 첨가 기술을 이용한 금속재료의 희토류 품질 향상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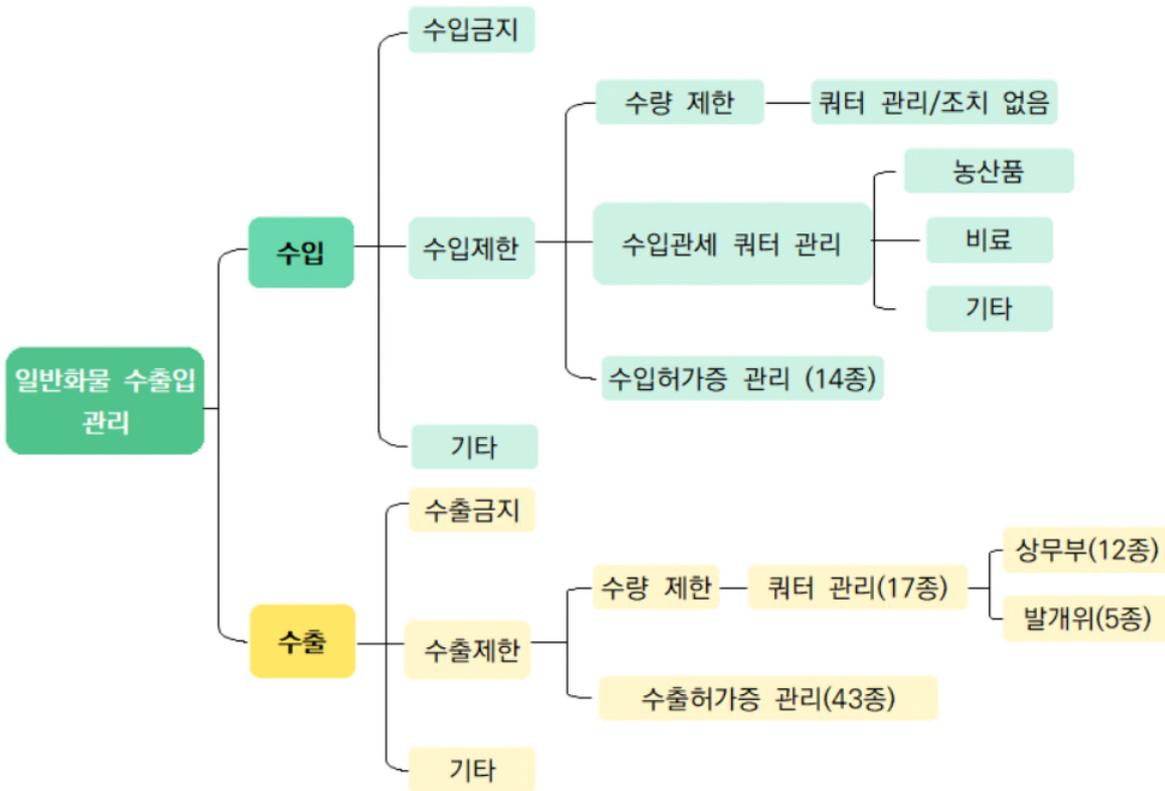
4. 일반화물의 수출입관리

- <중화인민공화국 화물수출입 관리조례*>는 상품의 자유로운 수출입 원칙 및 국제조약·협정에 따른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 등 기본 원칙을 명시(제1조~제7조), 자유 수출입 외 수출입금지 및 제한 화물 등으로 구분

* 동 조례는 2001년 12월 10일 공포, 2002년 1월 1일 시행. 일반화물에 대한 수입 또는 수출에 적용

- 일반화물의 수출입관리는 수출입금지, 수출입제한, 기타 등으로 구성

<일반화물의 수출입관리 절차 흐름도>



■ 일반화물의 수입관세 쿼터 관리(상무부, 발개위)

- 상무부는 <농산물 수입관세 쿼터 관리법>(2021)에 따라 울, 털실, 설탕, 비료 등 농산물 총 21개 품목에 대해, 발개위는 <농산물 수입관세 쿼터 잠정방법(2021년)>에 따라 밀, 옥수수, 입쌀, 석탄, 목화 등 5개 품목에 대해 쿼터 관리 시행
- 상무부, 발개위 각각의 주관 품목에 따라 신청서류 및 절차 등이 상이함

〈수입관세 쿼터 획득 절차 및 주요 내용〉

구분	상무부 주관 품목	발개위 주관 품목
적용 품목	울, 털실, 설탕, 비료 등 농산품	밀, 옥수수, 입쌀, 목화 등
필요서류	1) 수입관세 쿼터 신청표 2) 화물수입계약서 3) 기업 법인 영업허가증	1) 수입쿼터 신청 보고서 2) 기업 법인 영업허가증 3) 신청 품목 매출관련 부가가치세 영수증 4) 발개위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자격조건	상무부 공고에 따라 자격 확정	· 국영무역 쿼터 및 비국영무역 쿼터로 구분 · 신청자의 신청 수량 및 과거 수입실적, 생산능력 등을 참고하여 신청순서에 따라 배분
신청절차	성급 상무부 신청 → 성급 상무부에서 관세 쿼터 결정 → 상무부 관세쿼터 증명서 발급	성급 발개위 신청 → 성급 발개위 전달 → 발개위에서 관세쿼터를 비준
신청기간	· 매년 9월 15일~10월 14일 총량 발표 · 10월 15~10월 30일 수입업자 신청 · 12월 31일 전 쿼터배분 결정	· 매년 10월 15~30일 성급 발개위에 신청 · 매년 1월 1일 전에 '농산물 수입관세 쿼터증' 발급 (발개위 발표 공고문 참고)
심사기관	성급 상무부	성급 발개위

■ 일반화물의 수입허가증 관리

- 〈화물 수입허가증 관리방법(2004)〉, 〈수입허가증 신청발급 사용업무 규범(2020)〉 등에 따른 2024년 수입허가증 관리품목은 총 14종(HS 코드 10단위 기준 총 149개)
- 오존층 파괴물질, 화공장비, 금속제련장비, 크레인 운송장비, 제지장비, 전력전기장비, 식품가공 및 포장장비, 농업기계, 인쇄기계, 방직기계, 선박, X선관 등

〈상무부에서 관리하는 14종 수입허가증 관리 품목〉

번호	품 목	HS코드 10단위 기준 품목 개수	심사기관
1	오존파괴물질	76	상무부
2	화공장비	2	
3	금속제련장비	1	
4	공작기계	9	
5	크레인 운송장비	6	
6	제지장비	3	
7	전력전기장비	16	
8	식품가공 및 포장설비	6	
9	농업기계	9	
10	인쇄기계	8	
11	방직기계	1	
12	선박	10	
13	토너	1	
14	X선관	1	

* 2번~14번(화공장비, 금속제련장비, 공작기계 등)은 신규 장비 외 중고 장비도 수입허가증 관리 대상임

〈수입허가증 관련 획득 절차 및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적용 범위	상무부와 세관에서 공동으로 제정하는 〈수입허가증 관리품목 목록〉의 수입 제한 물품
필요서류	1) 수입허가증 신청표 2) 주관부서에서 발급한 수입 허가서류 3) 수입계약서 4) 수입상과 물품 수취인이 일치하지 않을시 〈위탁대리 협의서〉 제출 5) 상무부에서 규정한 기타 서류 6) 영업허가증 등 유효증서 추가 제출 요구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서면 신청
신청절차	수출기업 성(省)급 상무부서에 신청→상무부에 전달→상무부 접수 여부 결정→쿼터 배분
심사기간	근무일 기준 3일 내 발급, 특별한 경우 근무일 기준 10일을 초과하지 않음
발급기관	상무부 또는 상무부가 위탁한 성급 상무 주관부서
허가증 유효기간	허가증 발급일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 최장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연장 가능

■ 일반화물의 수출 쿼터 관리

- 상무부는 살아있는 소/돼지/닭, 밀가루, 옥수수가루, 쌀가루, 약용 인공재배 마황초, 감초 및 감초제품, 정제유 등 12종에 대해, 발개위는 소맥, 옥수수, 쌀, 석탄, 면화 5종에 대해 수출 쿼터 시행
- 상무부, 발개위 각각의 주관 품목에 따라 신청서류 및 절차 등이 상이함

〈상무부/발개위 수출 쿼터 획득 절차 및 주요 내용〉

구 분	상무부 주관 품목 및 허가증 획득 절차	발개위 주관 품목 및 허가증 획득 절차
적용품목	살아있는 소/돼지/닭, 밀가루, 옥수수가루, 쌀가루, 감초 및 감초제품, 정제유 등 12종	소맥, 옥수수, 쌀, 석탄, 면화 5종
필요서류	1) 수출 쿼터 신청보고 2)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3) 대외경영자 등록 또는 외상투자기업 설립 관련 증빙	1) 수출 쿼터 신청보고 2)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3) 발개위에서 요청하는 기타 서류
자격요건	1) 대외무역경영자 등록 2) 최근 3년간 위법, 규정 위반행위 없음 3) 쿼터 관리 물품별 요구조건에 부합 4) 국영무역 또는 비국영무역 자격 구비	국영무역 경영권을 획득한 수출업자
신청절차	수출기업 성(省)급 상무부서에 신청→상무부에 전달→상무부 접수 여부 결정→쿼터 배분	수출업자는 발개위에 서면으로 쿼터를 신청
신청기간	- 매년 10월 31일 이전 총량 발표 - 12월 15일 전 쿼터 배분	- 매년 10월 31일 이전 총량 발표 - 12월 15일 전 쿼터 배분
심사기관	국가 상무부	국가 발개위

■ 일반화물의 수출허가증 심사

- <화물수출허가증관리방법(2008)>, <수출허가증 신청 및 발급 사용업무 규범 (2020)> 등에 따른 2024년 수출허가증 관리목록은 총 43종임
- <수출허가증 관리목록>(43종, HS 코드 10단위 기준 총 914개)
 - 살아있는 소(5개), 살아있는 돼지(6개), 살아있는 닭(3개), 정제유(20개), 인광석(4개), 희토류(67개), 주석 및 주석 제품(12개), 텅스텐(14개), 몰리브덴(9개), 안티몬 및 안티몬 제품(8개), 코크스(1개), 정제유(20개), 그 외에 일부 금속 및 제품(코드비스무트/티타늄/텅스텐/백금/팔라듐/루테튬/철합금/니켈/탄탈륨/코발트/지르코늄/망간/베릴륨/크롬 등 127개), 오존층 파괴물질(75개), 톱재(44개), 오토바이 새시(331개) 등 포함

〈일반화물의 수출허가증 획득 절차 및 주요 내용〉

구 분	상무부와 세관에서 공동으로 제정하는 <수출허가증 관리목록>의 수출제한 품목
필요서류	1) 수출허가증 신청서 2) 주관부서의 허가서류 3) 수출계약서 4) 수출상 및 수취인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위탁대리 협의서> 제출 5) 상무부서에서 규정한 기타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서면 신청
절차	수출기업 성(省)급 상무부서에 신청→상무부에 전달→상무부 접수 여부 결정→쿼터 배분
심사기간	상무부 30일 내 심사 * 의견수렴 기간 미포함, 기타 부서 의견 필요시 심사기간 연장 가능
발급기관	상무부 또는 상무부가 위탁한 성급 상무 주관부서
허가증 유효기간	발급일부터 최장 6개월 유효

〈수출제한 상품 쿼터 품목 및 수출허가증 관리 품목 목록〉

번호	품 목	관리 종류		HS 코드 10단위 기준 수량	심사기관
		수출 쿼터	수출허가증		발개위/상무부
1	살아있는 소	○	○	5	상무부
2	살아있는 돼지	○	○	6	상무부
3	살아있는 닭	○	○	3	상무부
4	소고기 (신선/냉동)	×	○	16	상무부
5	돼지고기 (신선/냉동)	×	○	19	상무부
6	닭고기 (신선/냉동)	×	○	21	상무부
7	소맥	○	○	8	발개위
8	옥수수	○	○	4	발개위
9	쌀	○	○	20	발개위
10	밀가루	○	○	6	상무부
11	옥수수가루	○	○	7	상무부
12	쌀가루	○	○	8	상무부
13	약용 인공재배 마황초	○	○	1	상무부
14	감초 및 감초제품	○	○	6	상무부
15	꿀풀 및 꿀풀제품	○	○	4	상무부
16	천연모래	×	○	3	상무부
17	알루미나	×	○	2	상무부
18	인광석	×	○	4	상무부

19	마그네시아 클링커	×	0	8	상무부
20	활석(분말)	×	0	4	상무부
21	형석	×	0	4	상무부
22	희토	×	0	67	상무부
23	주석 및 주석 제품	×	0	12	상무부
24	텅스텐 및 텅스텐 제품	×	0	14	상무부
25	몰리브덴 및 몰리브덴 제품	×	0	9	상무부
26	안티몬 및 안티몬 제품	×	0	8	상무부
27	석탄	0	0	5	발개위
28	코크스	×	0	1	상무부
29	원유	0	0	1	상무부
30	정제유	0	0	20	상무부
31	파라핀	×	0	3	상무부
32	일부 금속 및 제품(비스무트/티타늄/텅스텐/백금/팔라듐/루테튬/철합금/니켈/탄탈륨/코발트/지르코늄/망간/베릴륨/크롬)	×	0	127	상무부
33	황산나트륨	×	0	1	상무부
34	탄화규소	×	0	2	상무부
35	오존층 파괴물질	×	0	75	상무부
36	시트르산	×	0	2	상무부
37	톱재	0	0	44	상무부
38	면화(cotton)	0	0	5	발개위
39	백은	×	0	8	상무부
40	백금	×	0	2	상무부
41	인듐 및 인듐 제품	×	0	3	상무부
42	오토바이(전지형차, all-terrain vehicle 포함) 및 엔진·프레임	×	0	15	상무부
43	자동차(완성차 부품) 및 새시 등	×	0	331	상무부

* 수출쿼터, 수출허가증은 품목에 따라 주관부처가 상이, 품목에 따라 수출쿼터 및 수출허가증을 모두 취득해야 수출 가능

5. 시사점

- 중국은 2020년 12월 <수출통제법>을 시행하고, 주요 원료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행하는 등 전략물자, 기술 등의 해외 수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
 - 2022년 말 희토류 관련 기술 수출제한 확대, 2023년 갈륨·게르마늄(8월~), 무인기 및 부품(9월~), 흑연(12월~) 등 주요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 국내수급 안정을 위해 요소 수출관리 강화 등 시행
 - 전략물자 관리, 기술 유출 방지, 글로벌 공급망 경쟁, 국가의 안전과 이익 보호 등을 목표로 향후 중국 당국의 수출관리는 지속 강화될 전망
-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우리 기업들도 중국의 수출입관리에 대한 관심과 주의 필요
 - 특히, 관련 품목(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경우 중국 내 수출입통제 관리 동향을 주시하고, 공급선 다변화, 비축량 확보 등의 사전 대응조치 필요